

정책/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CA, ACF, ACH, ACH-RA, GCC-RA, GKA-RA, JHC, JHC-RA
 책임 부서: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MCPS 직원의 성적 성희롱 Sexual Harassment of MCPS Employees

A.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소유지에서의 희롱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MCPS 교직원이 성희롱을 인식, 이해, 예방, 시정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성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책정합니다.

B. 이슈

1.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Board)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소유지에서 교직원, 학생 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 제삼자에 의한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에서의 MCPS 소유지란, MCPS 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MCPS 버스와 MCPS 차량, MCPS 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모든 시설과 공간, 여기에는 MCPS 가 관련된 개인과 괴롭힘/희롱 혐의가 발생한 상황에 MCPS 의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장소, 행사, 상황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2. 교직원, 학생 그리고 제삼자는 모두 성희롱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형태의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또한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의 예방, 시정, 징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취하는 행동은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및 주와 연방법과 일치합니다.

3.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2 년과 1991 년에 개정한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를 위반하는 것이며, 와 직원, 학생, 제삼자의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은 Title IX of the Educational Amendments of 1972(Title IX)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형태의 성희롱은 범죄 행위로 이루어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개인에 대한 성희롱은 아래에 명시된 법적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성희롱은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및 기타 성적인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를 경험하는 경우, 고용 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희롱을 행위에 해당합니다 -
 - (1)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조건으로 할 경우. (예: 대가성 성희롱) 또는,
 - (2) 개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결정의 근본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또는
 - (3) 그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 적대 또는 공격적인 업무환경을 부당하게 조성하는 목적 또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 b) 성희롱은 만약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험은 하나 이상할 경우, 미국 교육위원회의 해석인 Title IX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1) MCPS 직원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참여를 조건으로 MCPS 의 지원, 혜택,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 (2) 합리적인 사람이 결정한 원치 않는 행위가 너무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이어서 Title IX 규정에 따라 장소, 행사, 상황으로 정의한 MCPS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MCPS 가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와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평등한 접근이 효과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경우.

- (3) 미국 여성 폭력방지 법(U.S.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정의한 "성폭행(Sexual assault)",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또는 "스토킹(stalking)"의 경우
- (4) 제삼자(third party)는 MCPS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고 MCPS 의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학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 멘토, 자원봉사자, 공급업체, 계약자, 코치와 교직원 및/또는 학생이 MCPS 건물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C. 입장

- 1. 교육감은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조항을 알리고, 정책 위반이 주 또는 연방 민사법 및/또는 형사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시를 합니다.
- 2. 이 정책은 MCPS 직원 또는 제삼자의 모든 성희롱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교직원 또는 제삼자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합니다.
- 3. 성희롱은 일회성 또는 반복적인 사건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직원이나 제삼자와 관련된 성희롱에 대한 신고는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 성희롱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진 제삼자 또는 방관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a) 성희롱을 주장하거나 MCPS 직원이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DCI)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직접, 전화, 이메일(DCI@mcpsmd.org)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원들은 해당하는 경우 DCI에 문제를 제기할 책임자/감독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b) 불만 제기가 불만 제기자의 수퍼바이저나 제기자의 위치에 관련된 권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직원은 직접 DCI에 불만제기, 이의제기를 제출합니다.

- c) 신고는 MCPS Regulation GACA-R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려면 교직원은 MCPS 규정 ACI-RA, *MCPS 교직원의 Title IX 성희롱 조사*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d) 불만을 제기하거나 성희롱을 보고하는 것은 이의제기나 보고가 고의적 거짓이 아닌 한, 직원의 상태에 반영되지 않으며 직원의 향후 고용기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 성희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직원이나 제삼자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f) 또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방해, 제지, 강압, 협박, 희롱 또는 차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5. 직원, 제삼자와/또는 학생에 의한 직원과/또는 제삼자에 대한 성희롱 혐의는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의 적절한 지원과 주와 연방법 요건에 따라 DCI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a) MCPS 는 직원 및 제삼자의 성희롱 주장을 포함하여 조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MCPS 는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희롱에 관한 모든 신고를 검토하고, 정식 신고, 고충 조사, 지원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 MCPS 는 또한, MCPS 의 법적 의무와 성희롱 혐의 조사와 성희롱 발생 시 징계조치의 필요성에 일관되도록 고소인, 증인, 고소대상 개인의 보안유지를 중요히 여기고 이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혐의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서 MCPS 는 기록을 S 는 행위의 유형과 빈도, 주장된 사건이 발생한 맥락, 행위의 심각성,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었는지 또는 단순한 공격적인 행위나 발음인지를 포함하여 기록 전체와 상황의 총체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신고자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타당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결정은 증거의 우위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집니다.

- 7. 직원은 특정 행위가 괴롭힘 또는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a) 공격적 행동에는 불쾌한 농담, 비방/중상 욕설 또는 매도, 신체적 공격 또는 위협, 협박, 조롱 또는 알보기, 모욕 또는 비하, 불쾌한 물체 또는 사진과 업무 또는 학교에서의 활동 방해를 포함하며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이 정책에 명시된 성희롱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행위라도 만약 다른 법, 교육위원회 정책 및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의 *Employee Code of Conduct* 와 기타 책정된 규범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이에 따라 처벌됩니다. 적절하고 법에 부합할 경우, 이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교육위원회나 MCPS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c) MCPS 직원이,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연애 또는 성적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행동에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mployee Code of Conduct* 에 명시된 비윤리적 행위의 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8. MCPS 직원은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 지원 및/또한 지지/변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Compliance, Investigations, and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가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 바라는 결과

- 1. 모든 학생과 직원은 성희롱 신고 교육을 받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 조사, 대응 및 지원 조치 제공을 위한 효과적이고 법에 따른 조치가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 3. MCPS 직원, 학생 및 제삼자는 성희롱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E. 전략의 시행

- 1. 교육감은 다음을 시행합니다 –

- a) 이 정책과 관련 연방, 주법과 규정 적용을 담당하기 위해 Title VII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책임자와 Title IX 코디네이터를 지명합니다.
 - b) Title VII 와 Title IX, 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조사절차와 적절한 지원조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정책 적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 c) 이 정책 시행을 위해, MCPS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음을 제공합니다 –
 - (1)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해 이 정책의 적절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 (2) 학생, 교직원과 MCPS 소유지의 개인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규범과 다른 행동지침을 개발합니다.
2. 이 정책을 위반하는 MCPS 직원은 적절한 협상된 계약에 따라 위반에 대응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조치에는 구두, 서면 질책, 재배치, 강등 또는 좌천, 정직과 해고가 포함됩니다.
3. 이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학생은 *MCPS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위반에 대응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4. 성희롱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Title IX 위반을 주장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EEOC 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 또는 후에, MCPS 에 불만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Public Portal (<https://publicportal.eeoc.gov/>); 또는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5. Title IX 위반을 주장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OCR)에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OCR 전자 문제 신고/불만 신고 양식(Electronic Complaint Form)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artment of Education Buildin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6. .성에 관련된 범죄를 주장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특수 피해자 조사부(Special Victims Investigation Division)
 100 Edison Park Drive
 Gaithersburg, MD 20878

F. 검토와 보고

1. 교육감은 성희롱 신고와 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기타 규정 준수 노력을 분기(quarterly)마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사건 보고에는 이전 분기의 집계된 사건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수 보고서(compliance report)에는 불만사항 및 해결 절차 평가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며; 트레이닝 통계와 일정; 모든 MCPS 학교, 사무실, 업무환경과 MCPS 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이 정책의 성공적 적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정책은 교육 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열을 받습니다.

관련 자료: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42 U.S.C. §2000e et seq;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20 U.S.C. §1681 et seq; 29 C.F.R. §1604,11; 34 C.F.R 106.30(a);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6-104, §6-113, §6-113.2, §7-303.1, §7-424, §7-424.1, §7-424.3, and §11-60; Annotated Code of Maryland, State Government Article, Title 20, Human Relations;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12.05.02;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MCPS Guidelines for Student Gender Identity

정책 변경사: 새 정책, 2021 년 6 월 29 일 Resolution No. 323-21 채택; 2023 년 4 월 20 일 Resolution No. 176-23 채택에 따른 기술적 수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기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